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해 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1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5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0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6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1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6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86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1호)	1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5호)	1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0호)	1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6호)	1
5.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1호)	2
6.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6호)	2
7.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86호)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1호)	3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5호)	6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0호)	8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6호)	10
5.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1호)	11
6.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6호)	11
7.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86호)	14

Ⅲ. 검토의견	17
1. 개정안 제안 배경	17
2. 제22대 국회 심사경과	18
3. 개정안별 주요내용 비교표	20
4. 농업재해 정의 확대	21
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추가	27
나.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 추가	30
다. 병해충의 범위 확대	34
라. 산불로 인한 피해 추가	35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3
6.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	51
가.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 신설	53
나. 재해대책 마련 시 기후영향평가등 활용	54
다. 생산비 보장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6
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3
마.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64
바.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6
사. 재해대책 시행에 피해 최소화 및 일상회복 지원 내용 포함 ·	66
7.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68
8.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71
9.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보조와 지원	78
10.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98

11. 심의위원회 구성	104
12.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112
13.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116
14.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	119
15. 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	123
16. 부칙	125
 [참고자료]	 126

I .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411호)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3. 27.

다. 회 부 일 : 2025. 3. 28.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455호)

가. 발 의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610호)

가.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626호)

가.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5.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771호)

가.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6.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166호)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7.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486호)

가.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411호)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455호)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고온,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로 재해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어가가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 이후에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

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제1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농가와 어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후단 신설).

사.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

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610호)

(1)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중 병해충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해대책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어업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626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5.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9771호)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6.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166호)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에 「산림보호법」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7.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486호)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제안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농어업 관련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7건의 개정안은,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제22대 국회 심사경과

우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00841) 등 총 11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대안은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¹⁾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음에 따라 소위원회 의결 당일 안전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음.²⁾

이를 통해 마련된 대안(의안번호 2205977)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헌법」 제53조³⁾

-
- 1)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2) 2024년 11월 21일(목) 회의 진행 경과
 - ①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측(차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10시 11분 개의, 19시 13분 산회)
 - ②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대안이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됨(20시 16분 개의, 20시 46분 정회)
 - ③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1시 45분 개의, 23시 36분 산회)
 - ④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측(장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3시 40분 속개, 23시 58분 산회).
 - 3)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에 따른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됨.

[종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및 대안 심사이력]

구분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	2200841	문대림의원	24. 6. 24	24. 6. 25.	대안반영폐기 24. 11. 21.	대안반영폐기 24. 11. 28.	-
	2	2201015	문금주의원	24. 6. 27.	24. 6. 28.			
	3	2201699	이원택의원	24. 7. 12	24. 7. 15.			
	4	2201764	정희용의원	24. 7. 15.	24. 7. 16.			
	5	2202032	박수현의원	24. 7. 19.	24. 7. 22.			
	6	2202061	서삼석의원	24. 7. 22.	24. 7. 23.			
	7	2202102	윤준병의원	24. 7. 22.	24. 7. 23.			
	8	2202124	여기구의원	24. 7. 23.	24. 7. 24.			
	9	2202358	송옥주의원	24. 7. 29.	24. 7. 30.			
	10	2202660	성일종의원	24. 8. 8.	24. 8. 9.			
	11	2203255	박상웅의원	24. 8. 27.	24. 8. 28.			
대안		2205977	농해수위 위원장	24. 11. 27.	-	대안가결 (24. 11. 21.)	원안가결 (24. 11. 28.)	부결 (25. 1. 8.)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윤준병의원안은 종전에 의결된 대안과 대체로 동일한데, 보조 및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차액을 “지원하도록”의 무화하고,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의 대표뿐 아니라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안별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농업재해 유형		지진·이상 고온	지진·이상 고온	병해충 확대	이상고온	지진·이상 고온·산불	지진·이상 고온·산불	지진이상 고온·산불
기본계획 수립 (수립시기)		5년	5년	3년	-	-	5년	3년
재해대책 포함 사항 추가		생산비 보장 등 5개 항목	생산비 보장 등 5개 항목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책	-	-	생산비 보장 등 5개 항목	-
		일상 회복 지원	일상 회복 지원	-	-	-	일상 회복 지원	-
보 조 및 지 원 기 준 변 경	지원 내용	생산비 전부	생산비 일부	(농작물)생 산비 전부	-	-	생산비 전부	생산비 전부
	지원 기준	실거래가 수준	실거래가 수준	시장가격, 생산비 고려	실거래가, 물가상승률	-	실거래가 수준	실거래가 수준
	지원금 차액지원	차액지원 의무화	차액지원	-	-	-	차액지원	-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보험상품 미 출시 등 사유	보험상품 미 출시 등 사유	보험상품 미 출시, 친환경 농어업 생산	보험상품 미출시 등 사유	-	보험상품 미출시 등 사유	보험상품 미출시 등 사유
심의위원회 구성		농림축산 어업단체 대표 또는 대표 추천인	농림축산 어업단체 대표	-	-	-	농림축산 어업단체 대표	-
기타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	-	-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
		응급조치 종사자 보상근거	응급조치 종사자 보상근거	-	-	-	응급조치 종사자 보상근거	-
		재해피해 관련 통계수집	재해피해 관련 통계수집	-	-	-	재해피해 관련 통계수집	-
		재해피해 신고방법 안내 의무화	재해피해 신고방법 안내 의무화	-	-	-	재해피해 신고방법 안내 의무화	-
		-	-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	-	-	특별농어업 재해지역

4. 농업재해 정의 확대

동법 제2조에 따르면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4조4)에 따라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① 가뭄 피해의 경우 양수(揚水)에 들어간 유류대금 및 전기료 등을 ②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에는 농약대금을, 농작물 등을 다시 심는 경우에는 종묘대⁵⁾와 비료대를, 유실

4)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같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보조·지원하여야 함.

7건의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정의 규정상 재해의 유형에 ① 지진, ② 이상고온, ③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과 ④ 산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	-----	-----	-----	-----	-----
서 사용	-----	-----	-----	-----	-----
되는 용	-----	-----	-----	-----	-----
어의 뜻	-----	-----	-----	-----	-----
은 다음	-----	-----	-----	-----	-----
과 같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u>호우(豪雨)</u> , <u>해일</u> , 태	2. ----- ----- ----- ----- 호우(豪雨), <u>지진</u> , 해	2. ----- ----- ----- ----- -----	2. ----- ----- ----- ----- 지진, 해	2. ----- ----- ----- ----- 지진, 해	2. ----- ----- ----- ----- -----

5) 종묘대: 식부(植付, 경작지에 작물을 심는 일)한 묘 등의 비용, 묘를 자기 묘상에서 기른 경우 그 종자나 종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묘를 기르는데 들인 노력·재료·농약 및 농구 등의 비용은 각각 해당하는 비목에 계상함(농촌진흥청, 경영성과분석)

현	행	윤준병·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풍, 강	일, 태	-----	일, 태	일, 태	-----
	풍, 이	풍, 강	-----	풍, 강	풍, 강	--- 지
	상저온	풍-----	-----	풍, 이	풍---	진, 산
	(異常	-----	-----	상저온	-----	불, 이
	低溫),	-----	-----	(異常	-----	상고온
	우 박,	-----	-----	低溫),	-----	(異常
	서 리,	-----	-----	이상고	-----	高溫),
	조 수	-----	-----	온 (異	-----	이상저
	(潮水),	-----	-----	常 高	-----	온 (異
	대 설	-----	-----	溫)---	-----	常 低
	(大雪),	-----	-----	-----	-----	溫)---
	한 파	-----	-----	-----	-----	-----
	(寒波),	-----	-----	-----	-----	-----
	폭 염	-----	-----	-----	-----	-----
	(暴炎),	-----	-----	-----	-----	-----
	황 사	-----	-----	-----	-----	-----
	(黃砂),	-----	-----	-----	-----	-----
	대통령	-----	병 해	-----	-----	-----
	령으로	-----	충[지	-----	-----	-----
	정하는	-----	구 온	-----	-----	-----
	병해충	병해충	난 화	-----	-----	-----
	(病害	(病害	등 기	-----	(病害	-----
	蟲), 일	蟲)---	후 변	-----	蟲)---	-----
	조 량	-----	화 에	-----	-----	-----
	(日照	-----	따 라	-----	-----	-----
	量) 부	-----	발 생	-----	-----	-----
	죽, 유	-----	하 여	-----	-----	-----
	해야생	-----	광 범	-----	-----	-----
	동 물	-----	위 한	-----	-----	-----

현	행	윤준병·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야	-----	<u>피 해</u>	-----	-----	-----
	생 생물	-----	<u>를 끼</u>	-----	-----	-----
	보 호	-----	<u>치 는 -</u>	-----	-----	-----
	밋 관	-----	-----	-----	-----	-----
	리 에	-----	<u>- 病 害</u>	-----	-----	-----
	관 한	-----	<u>蟲) 을</u>	-----	-----	-----
	법 른」	-----	<u>포 함</u>	-----	-----	-----
	제 2 조	-----	<u>한다]</u> -	-----	-----	-----
	제 5 호	-----	-----	-----	-----	-----
	의 유	-----	-----	-----	-----	-----
	해 야 생	=====	-----	-----	-----	-----
	동 물 을	-----	-----	-----	-----	-----
	말 한	-----	-----	-----	<u>말 한</u>	-----
	다) ,	-----	-----	-----	<u>다), 대</u>	-----
	그 밖	그 밖	-----	-----	<u>형 산</u>	-----
	에 제5	에 이	-----	--- 농	<u>불</u>	-----
	조 제 1	<u>상 고 온</u>	-----	<u>업 재 해</u>	(「 산	-----
	항 에	(異 常	-----	<u>대 책</u>	<u>립 보호</u>	-----
	따 른	<u>高 溫) ,</u>	-----	<u>심 의 위</u>	<u>법 」</u>	-----
	농 업 재	<u>이 상 저</u>	-----	<u>원 회 가</u>	<u>제37조</u>	-----
	해 대 책	<u>온 (異</u>	-----	<u>인 정 하</u>	<u>의 대</u>	-----
	심 의 위	<u>常 低</u>	-----	<u>는 자</u>	<u>형 산</u>	-----
	원 회 가	<u>溫), 일</u>	-----	<u>연 현 상</u>	<u>불 을</u>	-----
	인 정 하	<u>조 량</u>	-----	(「 산	<u>말 한</u>	-----
	는 자	(日 照	-----	<u>립 보호</u>	<u>다. 이</u>	-----
	연 현 상	<u>量) 부</u>	-----	<u>법」 제</u>	<u>하 같</u>	-----
	으 로	<u>족 등-</u>	-----	<u>2조 제7</u>	<u>다)---</u>	-----
	인 하 여	-----	-----	<u>호 에</u>	<u>이 상 고</u>	-----
	발 생 하	-----	-----	<u>따 른</u>	<u>온 (異</u>	-----

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추가(윤준병·문대림·문금주·이원택·박수현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진을 포함하는 데 동의함.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진에 의한 농작물, 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신고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피해복구비 지원실적은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조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검토의견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디지털관측(1999년) 이후 규모 4에 달하는 중규모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

1999~2024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8회, 규모 3.0(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5회 발생하고 있음⁶⁾.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2016년 경북 경주(5.8), 2017년 경북 포항(5.4), 2024년 6월 부안(4.8) 지진 등 큰 규모의 지진이 농업·농촌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일부 농업용 저수지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횟수]

연 도	규모 3 이상 횟수	총 횟수(규모 2이상)
2020년	5	68
2021년	5	70
2022년	8	77
2023년	16	106
2024년	7	87

자료 : 기상청 웹사이트(<https://www.kma.go.k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해일, 조수를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진과 화산활동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재해 비교]

구 분	대상 재해	
자연재난 (행안부)	< 공통재해 11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해일, 조수(潮水)	<7개> 풍랑, 낙뢰, 지진 , 조류(藻類)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농업재해 (농식품부)		<7개> 이상저온, 우박, 서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6) 기상청 온라인 지진과학관, https://www.kma.go.kr/eqk_pub/obsrEarthquake.do?tab=3(검색일: 2025.6.19.)

두 법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동일 재해기간 중의 피해액이 기준 금액⁷⁾ 이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이 이루어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피해복구 부담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발생시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 시·군·구도 포함
농식품부	↕	(재해) 농업재해대책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별 호우·태풍·이상저온·폭염 등 50ha 이상, 대설·우박 30ha 이상, 또는 시설가축 피해액 3억원 이상 ⁸⁾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 피해 시 자체 지원

자료 : <2025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제출)

농촌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국고지원 기준 >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비 고
0.1미만	26억원 이상	-
0.1이상~0.2미만	33억원 이상	강원 삼척시 등 59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41억원 이상	대구 서구 등 71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49억원 이상	충북 청주시 등 48개 시·군·구
0.6이상	57억원 이상	경기 수원시 등 50개 시·군·구

8)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등과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가 시·군·구당 50ha 이상이거나 서리·우박·대설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시·군·구당 30ha 이상이거나,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시·군·구당 3억원 이상일 경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

이러한 농업재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을 추가하여 지원의 확실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나.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 추가(윤준병·문대림·문금주·이원택·박수현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이상고온”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나 기상상황과 농업피해의 객관적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저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명시되어 있으나, 여름이 아닌 시기에 기온이 평년보다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특히 문금주의원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있음을 감안한 취지임.

문금주·박수현의원안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상고온”을 추가하는 반면,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상고온”의 경우에만 농업재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⁹⁾

[이상고온 추가 관련 개정안 비교]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문금주·박수현의원안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u>이상저온</u> ,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u>일조량 부족</u> , 유해야생동물	-	<u>이상고온</u> 추가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그 밖에 <u>이상저온, 이상고온, 일조량 부족</u> 등 농업재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

자료 : 개정안 내용 재구성

기상청에서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 대책 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30℃ 내외의 고온 지속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는 “폭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온뿐 아니라 가뭄, 시설상태(환기, 냉방장치 등)에 따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라 발생하는 피해를 포괄하여 입식비,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함.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7~8월 및 8~9월 폭염피해 복구에 약 1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 지원 현황]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폭염 인삼피해 (7~8월)	8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에 폭염으로 인한 인삼 잎마름 및 고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891호	· 농작물: 2,955ha * 인삼 잎마름, 고사	■ 11,684백만원 - 보조 11,643(국비 8,150) - 융자 25 - 자부담 16 * 정책자금 상환연기: 59,022
폭염 (8~9월)	전북 고창, 제주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및 레드향 열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922호	■ 농작물: 522.1ha * 레드향440, 단호박78.1	■ 2,329백만원 - 보조 2,329(국비 1,630) * 정책자금 상환연기: 72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제출)

이상고온은 계절적 평균기온을 초과하는 고온 현상으로, 낮의 일최고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폭염과 밤의 일최저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포함함.¹⁰⁾

이상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해충 발생,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10년 대표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살펴보면 이
상고온도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10) 박태원·박현빈 등 5인, “한반도에서의 이상고온 발생의 지역적 특징”, <과학영재교육> 제13권 1호, 2021.

[최근 10년 대표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연도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 현황
2010년	한파와 대설	중부지방 대설 및 한파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발생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 30cm 이상의 대설로 시설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파손 1.6-9일 전국적인 한파(최저기온 -20°C이하)로 과수동해 발생
2011년	겨울한파, 7월 집중호우	1~2월 한파로 인해 전남, 전북,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 7.7-16일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51천ha, 가축 37만 마리 7.26-29일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 마리
2012년	연이은 태풍의 상륙	비닐하우스 1,776ha, 농작물 315,781ha 등 (피해액 306,667백만 원)
2013년	여름철 고온현상	닭, 오리 등 가축폐사(705농가, 1,985천 수 폐사)
2014년	2월 최장기간 대설	비닐하우스 41ha, 인삼재배시설 12ha, 축사4ha 등 농축산시설 82ha 파손, 농작물 59ha, 가축 67천수 등 피해
2015년	11~12월 이상고온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농경지에서 농작물 시들음 현상 등 가뭄 피해 발생 간척지 농업용수 염도 상승으로 벼 피해(서산 1,939ha, 태안 2,758ha 등)
2016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과실 일소 및 농작물 고사(16,599ha), 가축 폐사(4,444,876마리)
2017년	5월 이상고온, 7월 폭염	가축 5백만 마리 이상의 피해
2018년	7~8월 전국적 폭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수 일소피해 및 농작물 피해(22,509ha), 가축폐사(전국 9,078,528마리)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태풍영향	태풍 다나스(충남,전라,제주), 링링(전국), 타파(제주,경상), 미탁(강 원,전라, 경상,제주)에 의한 농작물 침수 농경제 유실·매몰, 농업시설 파손 등
2020년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4월(이상저온43,554ha 피해), 5-6월(우박 1,273ha), 7-8월(집중호 우 34,175ha), 8-9월(태풍 123,930ha)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2.

지구온난화의 본격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감안하
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농업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병해충의 범위 확대(송옥주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요건이 추가될 경우 법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임.

(2) 검토의견

현행법령¹¹⁾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태풍, 호우 등 기상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기상현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일상적인 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농업재해로 보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기상현상에 따른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한정하여 보도록 하는 취지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2021년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시간 부족에 기인한 전라북도 지역의 벼 이삭도열병¹²⁾이 있다고 함.

11)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12) 벼 이삭도열병은 벼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으로, 벼의 이삭 부분에 주로 발생하여 벼의 생육과 수확량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임. 이 병은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병 확률이 높아짐. 원인균은 *Pyricularia oryzae*라는 곰팡이(진균)로, 이 곰팡이가 벼 이삭에 감염되면 이삭 부분의 갈변, 쭈그러짐이 발생, 벼 수확량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함.

[2021년 벼 이삭도열병 발생 사례]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벼 이삭도열병 (‘21.8~9월)	‘21년 8~9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현상, 일조부족 등 기 상요인으로 전북지역 벼 병해 피해 *피해 농가수: 20,067호	■ 벼 40,425ha	■ 33,140백만원 - 보조 33,140(국비 23,198) - 융자 0 - 자부담 0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9.13.제출)

개정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과 비교하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광범위한 피해”와 같은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기타 자연재해의 경우와 같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상과의 인과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라. 산불로 인한 피해 추가(문금주·이원택·박수현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농수산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농어업 관련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5. 3. 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어업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 / 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 / 24,509 /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 3. 21. ~ 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20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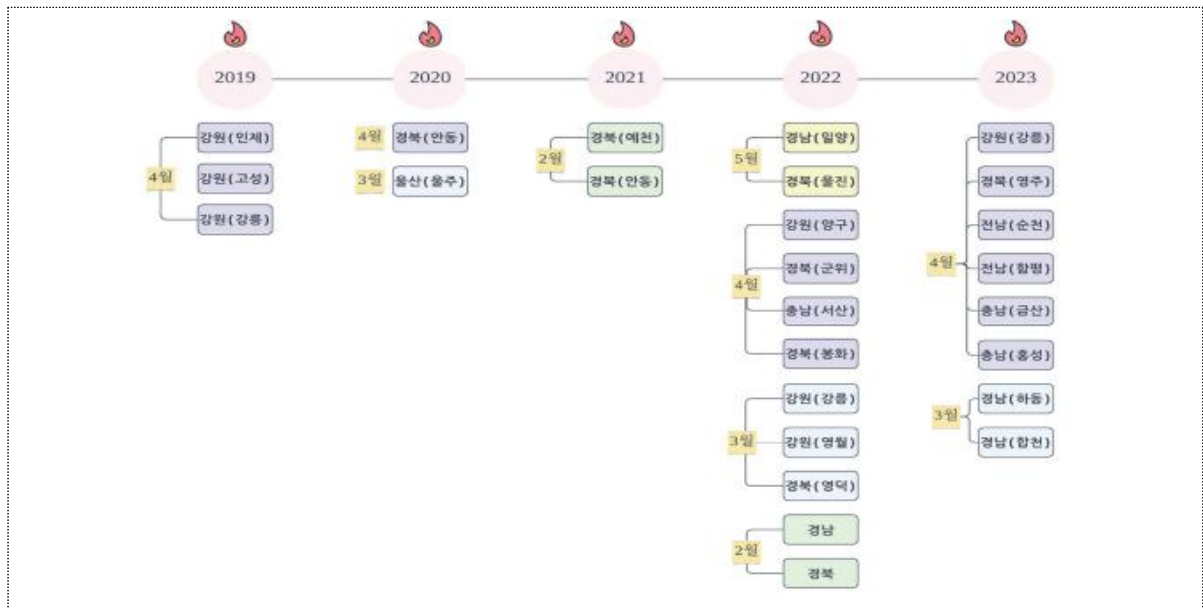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피해 면적과 대형산불이 증가하고 있음. 2020년대 산불피해 면적은 2010년대보다 7.8배, 대형산불은 3.7배 증가함.¹³⁾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자체가 산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강수량 감소와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요건과 대형화로 확대될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불과 기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¹⁴⁾

13) 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년대) 857ha / 1.3건 → ('20~'24) 6,720ha / 4.8건

14) 대형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5.)

[100ha 이상 대형산불 발생 현황]



자료: 대형산불의 증가, 진단과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5.)

이에 개정안은 동법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이원택의원안)에 자연현상으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산불(문금주의원안) 또는 대형산불(이원택의원안)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농어민을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산불 추가 관련 개정안 비교]

구분	현 행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농업 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	<u>「산림보호법」 제37조¹⁵⁾의 대형 산불 추가</u>	산불 추가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u>「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¹⁶⁾에 따른 산불이 이 호의 자연현상에 의해서 확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구분	현행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어업 재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	<u>「산림보호법」</u> <u>제37조의 대형</u> <u>산불</u> 추가	-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	-	-

자료 : 개정안 내용 재구성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적 재난 지원 체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불이 자연현상에 의해 확산되는 등 산불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도 농어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¹⁷⁾과 사회재난¹⁸⁾으로 구분하여 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¹⁹⁾ 산불을 포함한 화재는 사회재난에 해당함.

15) 「산림보호법」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16)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18)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19)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²⁰⁾에 따르면 사회재난의 경우 그 범위와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²¹⁾될 시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²²⁾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²³⁾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후략)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2025년 3월 영남지역 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번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5. 3. 21~30. 산불 피해 중점 지원사항]

○ 주거분야

- (주거 지원) 주택 전·반파자, 세입자 대상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現 지원 단가에 확대 지원 ※ 전파 +60백만원(반파 50%), 세입자 +5백만원
- (임시조립주택) 총 2,996동(개당 44백만원)에 대한 국고 50% 지원

○ 농·어·임·축산업 분야

- (지원단가 상향) 주요 작물의 대파비(代播費) 및 농·어업, 임·축산시설, 농기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피해 복구단가 현실화
※ (농작물) 일부 농작물 대파대 단가 현실화(59.9%→100), 대파대 지원을 상향(50%→100), (가축·곤충) 입식비 지원을 상향(50% → 100), (농업시설, 설비) 지원을 상향(35% → 45), (농기계) 기종 확대(11개 기종 → 전체 38개, 단가 66.1% 적용), 지원을 상향(35% → 50)
- (생계비 지원) 농·축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피해 규모·종류별로 생계비 최대 12개월 차등 지원

○ 마을공동체 복원 추진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을 고려하여, 단순 복구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향후 추가 확대 예정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특사업(신규) 5개소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52조를 준용하여 추진(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일반사업보다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

○ 기타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5백만원 → 10백만원(+5백만원), ※ 구호기금 2백만원 포함
- (송이) 피해 임가별로 생계비(2인 기준 1.2백만원) 2개월 지원

자료 : '25. 3. 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 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둘째, 현행법은 재해의 범위에 자연재해만을 포함하고 있어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해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산불도 최초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²⁴⁾에서 산불 피해 규모에 관계 없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산불이 아닌 화재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농어업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2023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불뿐 아니라 과수원, 논밭두렁, 목초지 등에서 발생하는 들불 발생건수도 상당함.

[2023년 발화장소별 피해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발화장소	화재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산불(소계)	546	2	85	65,331
공유림	41	0	7	2,310
국유림	86	1	2	4,191
사유림	419	1	76	58,829
들불(소계)	973	7	38	1,602
과수원	41	0	3	66
군·경사격장	13	0	0	1
기타 들불	216	1	3	81
논밭두렁	275	6	15	738
들판	222	0	8	498
목초지	10	0	1	75
묘지	100	0	5	71

자료: 2023년도 화재통계연감 (소방청, 2024. 7.)

24)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30.5%), 소각(23.5%), 담뱃불실화(6.6%), 건축물화재 비화(6%) 順 (2024년 산불통계연보, 산림청, 2025.2.)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여²⁵⁾ 산불과 기타 화재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요약하면, 개정안은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점, 산불이 사회재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산불 피해를 포함할 경우 일반 화재를 포함하여 사회재난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5건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 어가의 경영안정 을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농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 또는 어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 쳐 농어업재해대 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 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 과 생산비 보장 을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농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 또는 어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 쳐 농어업재해대 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 어가의 경영안정 을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농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 또는 어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 쳐 농어업재해대 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목 표 2.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대책 수 립에 관한 사항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 화 대비 농업생 산기반시설 개 선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을 통 한 농어가의 경 영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발 전 방향 및 목 표 2.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대책 수 립에 관한 사항 3.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 화 대비 농업생 산기반시설 개 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 대책을 통한 농 가·어가의 경 영안정 및 생 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대책의 목 표 2.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대책 수 립에 관한 사항 3.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 화 대비 농업생 산기반시설 개 선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을 통 한 농어가의 경 영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박수현의원안
	<u>부장관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u> <u>는 사항</u>	<u>산 식품 부 장 관</u> <u>또는 해양수산</u> <u>부장관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u> <u>는 사항</u>	<u>부장관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u> <u>는 사항</u>
	<u>③ 관계 중앙행정</u> <u>기관의 장과 특</u> <u>별시장·광역시</u> <u>장·특별자치시</u> <u>장·도지사 및</u> <u>특별자치도지사</u> <u>(이하 “시·도지</u> <u>사”라 한다)는 기</u> <u>본계획에 따라</u> <u>재해대책 시행계</u> <u>획(이하 “시행계</u> <u>획”이라 한다)을</u> <u>매년 수립·시행</u> <u>하여야 한다.</u>	<u>③ 관계 중앙행정</u> <u>기관의 장과 특</u> <u>별시장·광역시</u> <u>장·특별자치시</u> <u>장·도지사 및</u> <u>특별자치도지사</u> <u>(이하 “시·도지</u> <u>사”라 한다)는 기</u> <u>본계획에 따라</u> <u>재해대책 시행계</u> <u>획(이하 “시행계</u> <u>획”이라 한다)을</u> <u>매년 수립·시행</u> <u>하여야 한다.</u>	<u>③ 관계 중앙행정</u> <u>기관의 장과 특</u> <u>별시장·광역시</u> <u>장·특별자치시</u> <u>장·도지사 및</u> <u>특별자치도지사</u> <u>(이하 “시·도지</u> <u>사”라 한다)는 기</u> <u>본계획에 따라</u> <u>재해대책 시행계</u> <u>획(이하 “시행계</u> <u>획”이라 한다)을</u> <u>매년 수립·시행</u> <u>하여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과 해양수</u> <u>산부장관은 기본</u> <u>계획을 수립하는</u> <u>경우 제9조의2에</u> <u>따른 통계자료를</u> <u>반영하여야 한</u> <u>다.</u>		
	<u>⑤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과 해양수</u>	<u>④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과 해양수</u>	<u>④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과 해양수</u>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박수현의원안
	<u>산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⑥ 그 밖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산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⑤ 그 밖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산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⑤ 그 밖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의견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²⁶⁾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므로 별도의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나 협의 과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고,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의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5건의 개정안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수립주기, 수립 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 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안 조문 내용 비교]

구 분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기본계획 수립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수립목적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u>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u> 을 위하여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립절차	농업(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주기	5년	3년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의 목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대책의 목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 수립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기타	기본계획 수립 시 통계자료 반영	-	

자료 : 개정안 내용 재구성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²⁷⁾

27)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66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심각해짐을 고려하여,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예방대책과 피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향후 5년간의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세부대책인 집행계획을 수립·운영하게 됨.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가축전염병, 저수지 사고, 농업사고를 주관유형으로, 풍수해·가뭄·폭염·한파·대설·낙뢰, 식품사고 재난구호 및 복구를 협조유형으로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²⁸⁾

28) ▪ 주관유형 : 재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총괄적인 대응을 이끄는 기관이 담당 (가축전염병과 저수지는 농식품부에 다수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있고, 농업사고는 농업인과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농식품부의 주관유형임)

▪ 협조유형: 주관기관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을 돕는 역할 (풍수해, 가뭄, 폭염, 식품사고 등은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농식품부는 협조하는 기관으로 참여함)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중 농업재해대책과 관련된 계획을 현행과 같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과 역량의 통합적 운영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6.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

네 건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야 하는 재해대책의 내용과 지원의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 1.~ 13. (생략) 14. “ <u>농어업재해보험</u> ”이란 「 <u>농어업재해보험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어업재해보험</u> 을 말한다. 15. “ <u>보험목적물</u> ”이란 「 <u>농어업재해보험법</u> 」 제5조에 따른 <u>보험목적물</u> 을 말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u>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u>	제3조(재해대책) ----- -----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u> ----- ----- -- <u>마련하여야 한다.</u>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농작물에 대	1. (현행과 같음) 2. ----- -----복구 및 생산비 보장에----- ---- 3. (현행과 같음) 4. -----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및 재해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u>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u> 9.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가.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 신설(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 정의²⁹⁾를 동 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견 없음.

2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개정안 제3조제1항제8호(재해대책의 내용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제4조제8항(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사유로 인한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및 제9조의2제1항(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등에서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동법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 이해도 제고 및 법적 용어의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나. 재해대책 마련 시 기후영향평가등 활용(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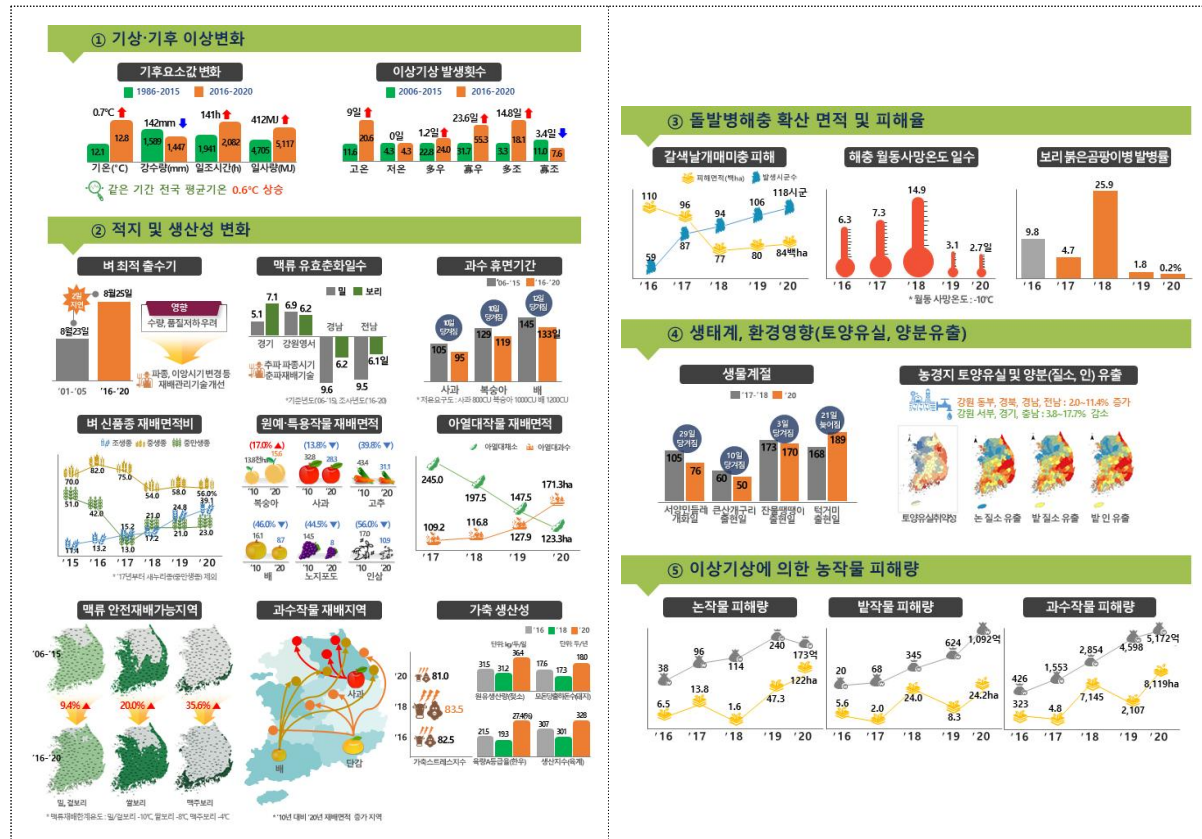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해대책을 마련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³⁰⁾에 따른

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주요 결과]



자료: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종합보고서(2016~2020), 농촌진흥청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농촌 분야

가.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생산비 보장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윤준병·문대림·송옥주·이원택의원안)

(1)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비 투입분에 대한 손실보상 및 경영안정 지원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이므로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 취지는 영어재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므로 생산비 보상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과 지원 범위 및 역할이 중복되며, 과도한 재정소요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보험가입 유인을 저해시켜 정책보험 정착 및 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복구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검토의견

현행 농산물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의 농가 수입의 감소와 영농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력 저하와 경영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식량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농업재해대책 사업을 통해 농작물 복구 비용으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대파대³¹⁾와 농약대를 각각 50%, 100%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파손 시 35%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경지와 시설물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농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 **관련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제4조제7항 : 농어가 지원 기준과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하여 지원
 -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로 등 피해복구 시설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이상 50%미만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 또는 6개월 변동,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인삼 3년 연장가능)

31)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보통 종자대 및 비료대가 이에 해당

□ 재해대책비의 주요항목 복구비 단가 및 부담률

복구비 항목		지원단가(예시)	복구비 부담률(%)			
			보조		용자*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작물	농약대	일반작물 79만원/ha, 과수류 276만원/ha	70	30	-	-
	대파대	일반작물 352만원/ha, 사과 1,766만원/ha	35	15	30	20
가축 : 입식비		돼지(육성돈) 255,209원/마리, 양봉 151,030원/군, 산란계(중추) 2,305원/마리	35	15	30	20
농림시설 : 복구비		비닐하우스(내재해형10, 단동1) 12,137원/m ² 인삼재배시설 A형 3,621원/m ²	24.5	10.5	55	10
생계지원비		2인가구 118만원, 4인가구 183만원	70	30	-	-
교생학자금면제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 100만원(1학기)	70	30	-	-

* 용자 조건 : 금리 1.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 추진절차

- 피해발생 신고(농업인)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자체) →
 중앙합동조사(중앙.지자체, 필요시) → 복구계획 심의(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복구비 예산 집행

□ '25년 예산 : 1,600억원

* 연도별 집행액 : ('20) 133,634 → ('21) 145,604 → ('22) 65,039 → ('23) 170,023 → ('24) 266,3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제출)

개정안은 “복구”에만 초점을 둔 생산기반에 대한 일부 보조 및 지원만으로는 농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생산비 보장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 체계 >

재해복구 (농어업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

< 개정안 >

재해복구 (농어업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 생산비 보상, 경영안정
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 재해복구 정부예산 : ('24) 2,800억원

참고로, 생산비는 경영비에 자가노동비, 자기자본용역비, 자기토지용역비를 합친 것을 말함.

[경영비와 생산비 구성 내용]

① 종묘비	② 비료비	③ 농약비	④ 기타재료비	⑤ 영농광열비	⑥ 감가상각비	⑦ 수리비	⑧ 임차료	⑨ 위탁료	⑩ 수선비	⑪ 고용노동비			
경영비											⑫ 자가노동비	⑬ 자기자본용역비	⑭ 자기토지용역비
생산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다만, 2001년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가입 농지별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평년(과거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수확량 또는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임.

보험 보장기간 내 전 생육단계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있는데³²⁾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량 감소를,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있음.

32) 예를 들어 벼 품목에 가입했다면, 보장기간 중 발생한 호우+태풍+우박 등 모든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확감소량을 수확기에 1회 측정하여 보상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보험 제도 비교]

구분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
목적	· 피해농장·시설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 ⇒ 농작물 피해확산 방지, 생산 재개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 ⇒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전적으로 위험 대비
보조율	· 대파대·가축입식비 50%, 농약대 100% 등 * 단가는 실거래가의 약 50~100% 수준 ('24: 62.4%)	·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농작물) 또는 50%(가축)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 농가 보험료 부담은 농작물 12.6%, 가축 38.8%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농가(품목 제한 X) · 농업 외 근로소득 50% 이상은 복구비 지원 제외 ·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대파대·입식비 지원 제외(생계비, 농약대는 지원)	· 보험 가입 농가(대상 품목 및 축종: 농작물 76종, 가축 16종, '25) * 가입 지역, 품종 등 일부 제한
농가 보상 (농작물)	· (금액) 지원단가×피해면적 · (시기) 통상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 · (절차) 피해 조사(지자체) → 복구비 확정(중앙) → 복구비 지급(중앙→지자체→농가)	① <u>농작물 수확감소보장</u> (43개 품목) · (금액) 피해액(수확량감소분×가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비율) · (시기) 품목별 수확기이후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② <u>농작물 생산비보장</u> (33개 품목) · (금액) 피해면적 × 단위면적 당 생산비×경과비율 × 피해율 · (시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마다 * 일부 품목 예외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보장방식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품목]

구 분		품 목	품목 수
수확량 보장방식 (43)	과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복분자, 오디, 무화과,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밤, 대추, 오미자, 호두, 블루베리	20
	논밭작물	벼,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팔, 보리, 귀리, 수박, 두릅, 배추, 무, 단호박, 당근, 녹두, 생강, 참깨	22
	기타	인삼	1
생산비 보장방식 (33)	논밭작물	고추, 파, 시금치, 메밀, 브로콜리, 양상추	6
	시설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
	시설작물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수박,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봄감자	23
총 계			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³³⁾, 대상품목 확대³⁴⁾, 보장수준 개선 등 노력을 통해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54.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신 납입하고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재해보험 가입률은 54.4%임.

3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 ('20) 10,158억원 → ('21) 5,740 → ('22) 5,558 → ('23) 10,042

34) '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꾸준히 목적물을 증가하여 '25년 현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4)]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47.7%	39.7%	87.4%	1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4)]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48.5%	12.7%	61.2%	38.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대책 지원 내용으로 생산비를 보장하게 된다면, 많은 농어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 원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농어업재해대책 및 보험과의 전체적인 체계와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윤준병·문대림·송옥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³⁵⁾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낮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송옥주의원안)은 기존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됨.

(2) 검토의견

네 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의 내용에 기후변화 대비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35) 「농어촌정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근거가 마련된다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대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는 가뭄, 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 보기 어려워 동법상의 지원 내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2) 검토의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병해충은 가뭄·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함.

개정안의 경우,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작물이 병해충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대책”에 포함하기보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등 관리·지원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바.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목적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 대파대,³⁶⁾ 가축입식비 등을 지원 중이므로 개정 실익이 낮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중복 방지 원칙³⁷⁾에 따라 재해복구비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보험목적물에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이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보험금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성이 낮아 보임.

사. 재해대책 시행에 피해 최소화 및 일상회복 지원 내용 포함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³⁸⁾ 재난이 발생한 경

36)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보통 종자대 및 비료대가 이에 해당

37)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38)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 실익이 낮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본이념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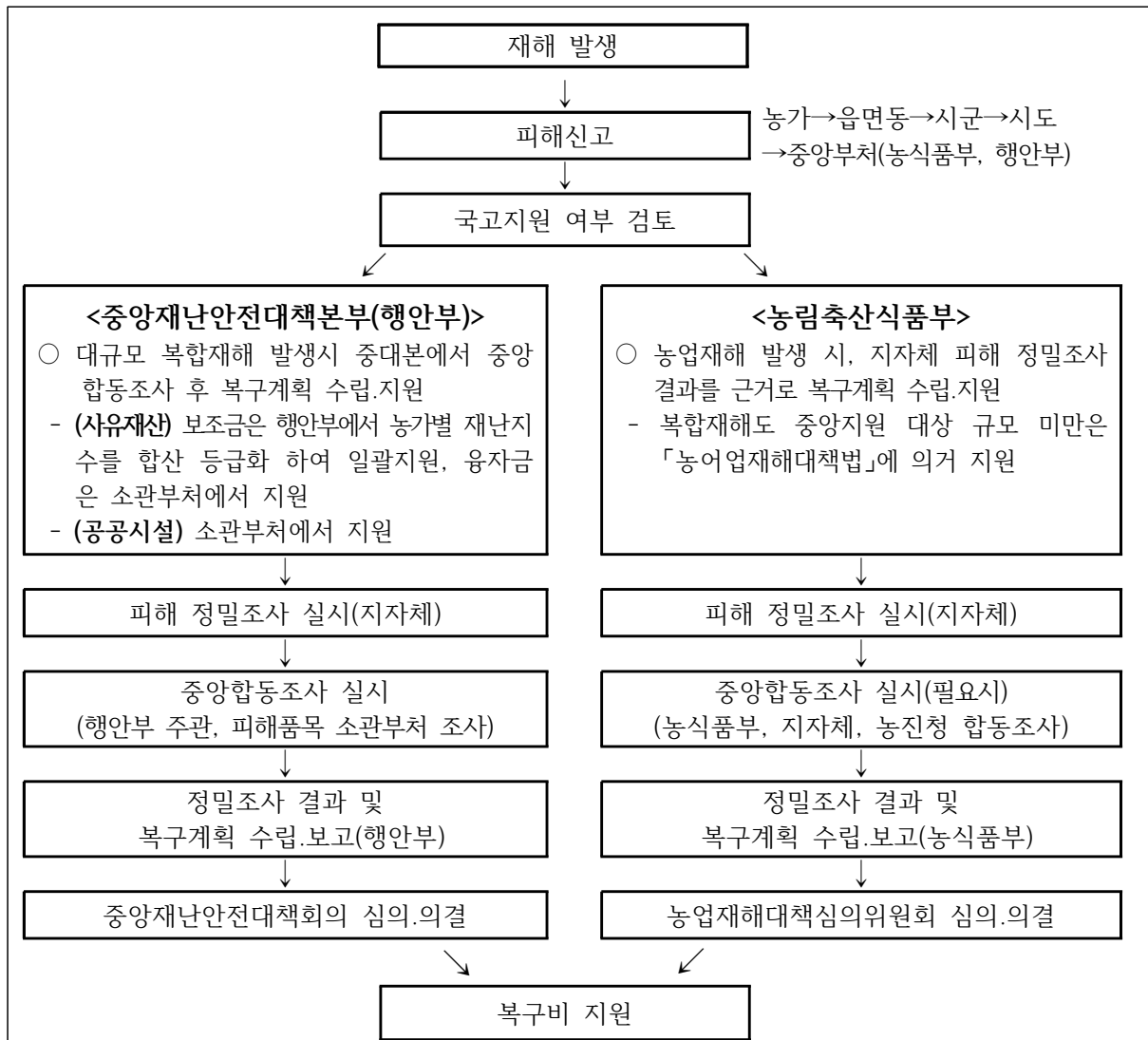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함.

나. 검토의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발생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하고, 읍·면·동장의 장은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이

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³⁹⁾

[복구지원 체계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①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지자체 등에서 농업재해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지역의 피해실태 등 초동 피해상황 조사와 피해조사 시 현장점검을 전화로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자체의 실태조사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피해 상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⁰⁾

다만,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보다는 “실태조사”로 약칭하고, 실태 조사의 방법 등은 부처간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⁴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41) 제4조(보조 및 지원)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8.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박수현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3조의2(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중복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여·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나. 검토의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공공시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국고 지원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자연재난의 경우 지자체 재정력 지수⁴²⁾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26~57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4건 중 자연재난은 3건으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6~7월 중 집중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것이었음.

42) 재정력지수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임.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함(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최근 5년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연재난 관련 선포	2	2	2	3	3
사회재난 관련 선포	1	1	0	3	1
합 계	3	3	2	6	4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폭설,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농어가의 생계 및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어업 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식량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23.6.13)되기 전까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인, 지자체 등은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었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023. 6. 13. 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u>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u>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그러나 동 규정의 개정('23.6.13)으로 농작물·가축 위주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물·가축이 추가됨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도 상향조정되었음(국고 +2억원, 특별재난지역 시군구 +5억원, 읍면동 +5천만원).

[행정안전부 국고지원 기준 비교]

시군구 재정력지수	현 행	개 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비고
0.1 미만	18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특별재난은 국고지원 피해액의 2.5배
0.1 이상~0.2 미만	24억원 이상	26억원 이상	65억원 이상	
0.2 이상~0.4 미만	30억원 이상	32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0.4 이상~0.6 미만	36억원 이상	38억원 이상	95억원 이상	
0.6 이상	42억원 이상	44억원 이상	110억원 이상	

주: 현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이 26~57억원으로 상향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실제 2023년 8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의 사과와 자두, 복숭아 등 4천 7백여 농가, 3천 27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음(2개군/15개 읍·면, '23.8.1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위 냉해 피해 시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복구비로 1,273억원을 지급(피해액 1,104억원)하였음.

[2023년 냉해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구분	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계	9개 지자체	2개 지자체	7개 지자체 15개 읍·면
충북	1개 지자체	-	• 영동군 양강면
전남	1개 지자체	-	•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7개 지자체	• 의성군 • 청송군	•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함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하도록 한 것은 현행 조직체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일반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에서는 지자체장인 도지사·시장·군수가 선포 요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9.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보조와 지원

개정안은 재해대책에 있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 해주거나 실거래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하 여 야	-----	-----	작 물		-----	-----
한 다 .	-----	-----	등 의		-----	-----
다 만 ,	-----	-----	시 장 가		-----	-----
「 재 난	-----	-----	격 과		-----	-----
및 안	-----	-----	생 산 비		-----	-----
전 관 리	-----	-----	를 고		-----	-----
기 본	-----	-----	려 하 여		-----	-----
법 」 ,	-----	-----	최 대 한		-----	-----
「 야 생	-----	-----	의		-----	-----
생 물	-----	-----			-----	-----
보 호	-----	-----			-----	-----
및 관	-----	-----			-----	-----
리 에	-----	-----			-----	-----
관 한	-----	-----			-----	-----
법 률」 ,	-----	-----			-----	-----
그 밖	-----	-----			-----	-----
의 법	-----	-----			-----	-----
령 에	-----	-----			-----	-----
따 라	-----	-----			-----	-----
재 해 의	-----	-----			-----	-----
예 방 ,	-----	-----			-----	-----
피 해 의	-----	-----			-----	-----
경 감 ,	-----	-----			-----	-----
재 해 의	-----	-----			-----	-----
복 구	-----	-----			-----	-----
및 지	-----	-----			-----	-----
원 조	-----	-----			-----	-----
치 를	-----	-----			-----	-----
받 은	-----	-----			-----	-----
농 가 와	-----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어 가 는	-----	-----	-----		-----	-----
이 법	-----	-----	-----		-----	-----
에 따	-----	-----	-----		-----	-----
른 보	-----	-----	-----		-----	-----
조 및	-----	-----	-----		-----	-----
지 원	-----	-----	-----		-----	-----
대 상 에	-----	-----	-----		-----	-----
서 제	---- 제	---- 제	-----		---- 제	-----
외 하 되,	외 하 되,	외 하 되,	-----		외 하 되,	-----
이 법	복 구	복 구	-----		복 구	-----
에 따	및 지	및 지	-----		및 지	-----
른 지	원 금	원 금	-----		원 금	-----
원 금 보	액 이	액 이	-----		액 이	-----
다	「재 난	「재 난	-----		「재 난	-----
「농 어	및 안	및 안	-----		및 안	-----
업 재 해	전 관 리	전 관 리	-----		전 관 리	-----
보 험	기 본	기 본	-----		기 본	-----
법 」	법 」,	법 」,	-----		법 」,	-----
및	「야 생	「야 생	-----		「야 생	-----
「풍 수	생 물	생 물	-----		생 물	-----
해 · 지	보 호	보 호	-----		보 호	-----
진 재 해	및 관	및 관	-----		및 관	-----
보 험	리 에	리 에	-----		리 에	-----
법」에	관 한	관 한	-----		관 한	-----
따 라	법률」,	법률」,	-----		법률」,	-----
실 제	그 밖	그 밖	-----		그 밖	-----
수 령 한	의 법	의 법	-----		의 법	-----
보 험 금	령 에	령 에	-----		령 에	-----
이 적	따 른	따 른	-----		따 른	-----
은 경	복 구 비	복 구 비	-----		복 구 비	-----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우 그	및 지	및 지	-----		및 지	-----
차액을	원 금	원 금	-----		원 금	-----
지원할	또 는	또 는	-----		또 는	-----
수 있	「농어	「농어	-----		「농어	-----
다.	업 재 해	업 재 해	-----		업 재 해	-----
	보 험	보 험	-----		보 험	-----
	법」--	법」--	-----		법」--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	-----		-----	-----
	하여야	-----	-----		-----	-----
	한다.	-----.	-----		-----.	-----
② 국	② ---	② ---	② ---		② ---	② ---
가 와	-----	-----	-----		-----	-----
지방자	-----	-----	-----		-----	-----
치단체	-----	-----	-----		-----	-----
가 제1	-----	-----	-----		-----	-----
항 에	-----	-----	-----		-----	-----
따 라	-----	-----	-----		-----	-----
재해를	-----	-----	-----		-----	-----
입 은	-----	-----	-----		-----	-----
농가에	-----	-----	-----		-----	-----
대하여	-----	-----	-----		-----	-----
하 는	-----	-----	-----		-----	-----
보조와	-----	-----	-----		-----	-----
지원은	-----	-----	-----		-----	-----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규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다 음 각 호 에 따 른 다.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 행 과 같음)	1. · 2. (현 행 과 같음)	1. · 2. (현 행 과 같음)		1. · 2. (현 행 과 같음)	1. · 2. (현 행 과 같음)
3. 농작 물 이 나 산 림 작 물 을 다 시 심 는 경 우: 종 묘 대 금 및 <u>비 료</u> <u>대 금</u>	3. ---- ---- ---- ---- ---- ---- ---- ---- ---- ---- ---- <u>비 료</u> <u>대 금</u> <u>등</u> <u>재 해</u> <u>이 전</u> <u>까 지</u> <u>투 입</u> <u>된</u> <u>생 산</u> <u>비 용</u>	3. ---- ---- ---- ---- ---- ---- ---- ---- ---- ---- ---- <u>비 료</u> <u>대 금</u> <u>등</u> <u>재 해</u> <u>이 전</u> <u>까 지</u> <u>투 입</u> <u>된</u> <u>생 산</u> <u>비 용</u>	3. ---- ---- ---- ---- ---- ---- ---- ---- ---- ---- ---- <u>비 료</u> <u>대 금</u> <u>등</u> <u>재 해</u> <u>발 생</u> <u>시 까</u> <u>지</u> <u>투 입</u> <u>된</u> <u>생 산</u>		3. ---- ---- ---- ---- ---- ---- ---- ---- ---- ---- ---- <u>비 료</u> <u>대 금</u> <u>등</u> <u>재 해</u> <u>이 전</u> <u>까 지</u> <u>투 입</u> <u>된</u> <u>생 산</u> <u>비 용</u>	3. ---- ---- ---- ---- ---- ---- ---- ---- ---- ---- ---- <u>비 료</u> <u>대 금</u> <u>등</u> <u>재 해</u> <u>이 전</u> <u>까 지</u> <u>투 입</u> <u>된</u> <u>생 산</u> <u>비 용</u>

[illegible]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인 한	----	----			----	----
수 산	----	----			----	----
양 식	----	----			----	----
물 의	----	----			----	----
피 해	----	----			----	----
가	----	----			----	----
있 는	----	----			----	----
경우	----	----			----	----
	-	-			-	-
가 . .	가. . 나.	가. . 나.			가. . 나.	가. . 나.
나 .	(현행	(현행			(현행	(현
(생	과	과			과	행과
략)	같음	같음			같음	같음
<신 설>	다. 재해	다. 재			다. 재해	다. 재해
	<u>이 전</u>	<u>해</u>			<u>이 전</u>	<u>이 전</u>
	<u>까 지</u>	<u>이전</u>			<u>까 지</u>	<u>까 지</u>
	<u>투 입</u>	<u>까지</u>			<u>투 입</u>	<u>투 입</u>
	<u>된 생</u>	<u>투입</u>			<u>된 생</u>	<u>된 생</u>
	<u>산 비</u>	<u>된</u>			<u>산 비</u>	<u>산 비</u>
	<u>용 의</u>	<u>생산</u>			<u>용 의</u>	<u>용 의</u>
	<u>전 부</u>	<u>비용</u>			<u>전 부</u>	<u>전 부</u>
	<u>또 는</u>	<u>의</u>			<u>또 는</u>	<u>또 는</u>
	<u>일부</u>	<u>일부</u>			<u>일부</u>	<u>일부</u>
2. ~	2. ~	2. ~			2. ~	2. ~
4. (생	4. (현	4. (현			4. (현	4. (현
략)	행 과	행 과			행 과	행 과
	같음)	같음)			같음)	같음)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⑥ (생	⑥ (현	⑥ (현	⑥ (현		⑥ (현	⑥ (현
략)	행 과	행 과	행 과		행 과	행 과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⑦ 제2	⑦ ---	⑦ ---	⑦ ---		⑦ ---	⑦ ---
항부터	-----	-----	-----		-----	-----
제 6 항	-----	-----	-----		-----	-----
까 지 의	-----	-----	-----		-----	-----
규 정 에	-----	-----	-----		-----	-----
따 른	-----	-----	-----		-----	-----
농 가 와	-----	-----	-----		-----	-----
어 가 에	-----	-----	-----		-----	-----
대 한	-----	-----	-----		-----	-----
보 조	-----	-----	-----		-----	-----
및 지	-----	-----	-----		-----	-----
원 의	-----	-----	-----		-----	-----
기 준 과	-----	-----	-----		-----	-----
방 법 에	-----	-----	-----		-----	-----
관 하 여	-----	-----	-----		-----	-----
는	-----	-----	-----		-----	-----
「 재 난	-----	-----	-----		-----	-----
및 안	-----	-----	-----		-----	-----
전 관 리	-----	-----	-----		-----	-----
기 본	-----	-----	-----		-----	-----
법」을	-----	-----	-----		-----	-----
준 용 하	-----	-----	-----		-----	-----
되, 같	-----	-----	-----		-----	-----
은 법	-----	-----	-----		-----	-----
에 규	-----	-----	-----		-----	-----
정 되 어	-----	-----	-----		-----	-----
있 지	-----	-----	-----		-----	-----
아 니 한	-----	-----	-----		-----	-----
사 항 에	-----	-----	-----		-----	-----
			---시 장 가 격 과 재 해 발 생 시 까 지 투 입 된 생 산 비 용 을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대 하 여	-----	-----	<u>고 려 하</u>		-----	-----
는 농	-----	-----	<u>여 농</u>		-----	-----
림 축 산	-----	-----	<u>림 축 산</u>		-----	-----
식 품 부	-----	-----	<u>식 품 부</u>		-----	-----
및 해	-----	-----	-----		-----	-----
양 수 산	-----	-----	-----		-----	-----
부 의	-----	-----	-----		-----	-----
공 동 부	-----	-----	-----		-----	-----
령 (이	-----	-----	-----		-----	-----
하 “공	-----	-----	-----		-----	-----
동 부	-----	-----	-----		-----	-----
령 ” 이	-----	-----	-----		-----	-----
라 한	-----	-----	-----		-----	-----
다) 으	-----	-----	-----		-----	-----
로 정	-----	-----	-----		-----	-----
한 다 .	-----.	-----.	--.		-----.	-----.
< 후 단	<u>이 경</u>	<u>이 경</u>			<u>이 경</u>	<u>이 경</u>
신설>	<u>우 국</u>	<u>우 국</u>			<u>우 국</u>	<u>우 국</u>
	<u>가 밋</u>	<u>가 밋</u>			<u>가 밋</u>	<u>가 밋</u>
	<u>지 방 자</u>	<u>지 방 자</u>			<u>지 방 자</u>	<u>지 방 자</u>
	<u>치 단 체</u>	<u>치 단 체</u>			<u>치 단 체</u>	<u>치 단 체</u>
	<u>는 실</u>	<u>는 실</u>			<u>는 실</u>	<u>는 실</u>
	<u>거 래 가</u>	<u>거 래 가</u>			<u>거 래 가</u>	<u>거 래 가</u>
	<u>수 준 으</u>	<u>수 준 으</u>			<u>수 준 으</u>	<u>수 준 으</u>
	<u>로 지</u>	<u>로 지</u>			<u>로 지</u>	<u>로 지</u>
	<u>원 기 준</u>	<u>원 기 준</u>			<u>원 기 준</u>	<u>원 기 준</u>
	<u>을 정</u>	<u>을 정</u>			<u>을 정</u>	<u>을 정</u>
	<u>하 여 야</u>	<u>하 여 야</u>			<u>하 여 야</u>	<u>하 여 야</u>
	<u>한다.</u>	<u>한다.</u>			<u>한다.</u>	<u>한다.</u>
⑧ (생	⑨ (현	⑨ (현	⑨ (현	⑧ (현	⑨ (현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락) <u><신 설></u>	행 제8 항 과 같음)	행 제8 항 과 같음)	행 제8 항 과 같음)	행 과 같음) ⑨ 국 <u>가 와</u> <u>지 방 자</u> <u>치 단 체</u> <u>는 제7</u> <u>항 에</u> <u>따 라</u> <u>농 가 와</u> <u>어 가 에</u> <u>대 한</u> <u>보 조</u> <u>및 지</u> <u>원 의</u> <u>기 준 을</u> <u>정 하 는</u> <u>경 우</u> <u>실 거 래</u> <u>가 와</u> <u>물 가 상</u> <u>승 륜 을</u> <u>고 려 하</u> <u>여 야</u> <u>한다.</u>	행 제8 항 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상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보장이나 생산비를 고려한 보상은 재해 복구제도의 취지(응급복구, 생계지원) 및 정책방향,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이를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타 법령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액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함.

(2) 기획재정부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과 지원 범위·역할이 중복되고 과도한 재정소요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중이며, 실거래가·물가상승률 연동을 명시적으로 규정 시 재정부담 가중 및 재정운용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같이 생산비에 대한 피해 보상 개념의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보험가입 유인을 저해시켜 정책보험 정착 및 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에 대한 지원이 농작물 복구와 생계안정이 기준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게 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생산비까지 보상하게 되어 복구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4) 해양수산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취지는 영어(營漁) 재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생산비 보상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검토의견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에 따르면 2020년 0.5%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조사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식량가격 상승과 유가 폭등, 이상기후 현상 등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은 농림어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⁴³⁾.

43) 조선비즈, 한은 “이상기후, 물가 상승률 10% 기여… 식료품·과실 영향 커”, 2024.8.19.

[농가경제조사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20년	1,477	△2%	1,148	4%	4,990	1%	1,452	△1%
2021년	1,441	△2%	1,148	0%	5,188	4%	1,605	11%
2022년	1,719	19%	1,144	0%	6,111	18%	1,853	15%
2023년	1,822	6%	1,355	18%	5,736	△6%	1,952	5%
2024년	1,848	1.4%	1,453	7.2%	5,419	△5.5%	2,055	5.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5.6.18. 제출)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대책 지원 대상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어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포함되지 않고,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함.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품목별 현실화율]

품목 분류		개수	평균(%)		합계 평균(%)	
			2023	2024	2023	2024
농업시설(75)	비닐하우스	55	46.6	48.8	54.4	54.9
	인삼시설	3	56.2	56.3		
	버섯시설	3	70.0	70.0		
	과수시설	6	81.7	84.7		
	부대시설	7	70.8	71.4		
	양액재배	1	50.0	50.0		
대파대(48)	일반작물(식량)	1	100.0	100.0	67.6	74.8
	채소(엽근채, 과채류 등)	18	91.0	91.9		
	인삼(1~6년근)	3	46.5	51.4		
	과수(사과, 배, 복숭아 등)	12	51.1	55.2		
	화훼(백합, 장미 등)	9	71.5	74.4		
	기타(버섯, 녹차 등)	5	68.6	70.5		
농약대(6)	일반작물	1	93.7	94.0	82.6	84.8
	채소류	1	100.0	100.0		
	과수류	1	91.5	91.7		
	인삼	1	74.3	74.3		

품목 분류		개수	평균(%)		합계 평균(%)	
			2023	2024	2023	2024
	약용류	1	86.3	86.5		
	화훼류	1	50.0	62.0		
가축입식(41)	소	6	51.0	51.8	57.3	56.1
	돼지	2	54.0	51.3		
	가금류	21	59.1	57.5		
	사슴	3	34.4	38.0		
	말	3	42.2	44.5		
	꿀벌	2	55.2	55.2		
	기타(염소, 개, 토끼, 지렁이)	4	89.0	80.5		
	축사·곤충 사육사(14)	소	2	37.9		
돼지		2	36.5	41.3		
가금류		6	36.5	44.0		
곤충		2	95.1	95.1		
기타(토끼, 간이축사)		2	45.6	50.6		
축산 분뇨시설(6)	소	2	55.6	55.6	55.6	55.6
	돼지	1	55.6	55.6		
	가금류	3	55.6	55.6		
초지(3)	초지복구	3	50.0	58.9	50.0	58.9
잠실(4)	잠실(누에)	4	93.7	93.7	93.7	93.7
곤충(15)	식용	5	89.8	90.6	70.4	74.0
	사료·학습	3	85.2	85.2		
	누에	2	73.6	73.6		
	천적	5	40.8	50.8		
농경지(2)	유실	1	70.3	70.3	49.4	52.4
	매몰	1	28.5	34.5		
합계 / 평균		214	('23) 59.9% → ('24) 6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2025. 5. 19.)

이에 농어민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의 규모가 적고 피해 회복 및 생계유지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개정안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영농광열비,⁴⁴⁾ 감가상각비, 수리비,

임차료, 위탁료, 수선비, 고용노동비 + 자가노동비, 자기자본용역비, 자
기토지용역비)을 보전해주거나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
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즉, 차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도 차액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44) 농업활동에 필요한 연료와 열 비용(난방, 난온, 건조, 양수 등)

45)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확량 감소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는 체계이다 보니, 재해
당시 피해를 입었으나 약제방제 등 관리를 통해 수확량 감소가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금이 줄어
들어 피해면적별 복구단가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농가가 받는 보험금”이 “자가부담 없이 무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차액 지원 규정을 도입함(「농어업재해대책
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 6.).

[보조 및 지원 관련 개정안 비교]

현행규정(항)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①재해대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 또는 최대한 보조	-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①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	-	농작물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	-	-	-
① 농어업재해 보험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과의 차액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보험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과의 차액 지원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보험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과의 차액 지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보험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과의 차액 지원	-
②농작물 등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일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③수산양식물 피해 지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일부	-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
⑦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준용	실거래가 수준	실거래가 수준	시장가격과 재해발생시 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고려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고려	실거래가 수준	실거래가 수준

자료 : 개정안 내용 재구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 국고보조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③ 생략

각각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생산비 보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등 재난 대책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들과의 관계, 재해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고려하여 “생산비 보장” 포함 여부와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임.

둘째,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고려한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단가인상 세부내역]

구 분		'19년단가	'20년단가	'22년단가	'23년단가	'24년단가
농경지 (만원/ha)	농경지 유실	3,593	5,136	5,136	5,316	5,701
	농경지 매몰	1,160	1,658	2,271	2,271	3,067
농약대 (만원/ha)	일반작물(벼 등)	59	74	74	74	79
	과수류	199	249	249	249	276
	약용류	107	157	157	157	160
	화훼류	712	890	1,268	1,572	1,886
대파대 (만원/ha)	채소(과채류)	707	884	884	884	1,384
	채소(상추)	469	586	586	586	813
	채소(멜론)	707	884	884	884	1,111
	채소(참외)	707	884	884	884	944
	채소(호박)	707	884	884	884	1,058
	채소(딸기)	1,811	2,264	2,264	2,264	3,541
	채소(쪽파)	457	571	571	571	913
	채소(토마토)	1,472	1,840	1,840	1,840	2,272
	채소(파프리카)	3,303	4,088	4,088	4,088	4,553
	인삼(3~4년근)	-	2,169	2,169	2,169	2,706
	복숭아	218	218	306	306	383
	포도	220	344	496	596	767
가 축 입식비 (원/마리)	한우(송아지)	1,400,500	1,400,500	1,529,500	1,728,810	1,878,500
	돼지(육성돈)	139,000	211,500	211,500	211,500	255,209
	육계(병아리)	427	427	427	427	659
	오리(중추)	2,564	3,206	3,206	3,206	5,749
시 설 복구비 (원/m ²)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3,330	3,330	4,054	5,578	6,973
	내재해형-07-단동-1	-	-	6,229	6,229	8,521
	인삼재배시설(A형,연목)	2,910	2,910	2,910	2,910	3,621
	과수재배시설(방조망)	1,600	1,958	2,228	2,673	3,11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8.2. 제출)

따라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에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셋째,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와의 차액 지원**과 관련하여, 제4조 제1항 단서의 전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같은 단서 후단에서는 다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농어가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전·후단의 내용이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⁴⁶⁾

이에 따라 최근(2025.4.22.) 제4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⁴⁷⁾와 같이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음이 명확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차액 지원 대상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4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2024. 8.)」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신구조문대비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전)」	「농어업재해대책법(25.4.22.개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u>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u>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10.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박수현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⑦ (생 략)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재 해 보 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⑦ (생 략)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 재 해 보 험 상품 미출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을 통한 생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가 및 어가가 보조 및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⑧ (생 략)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 재 해 보 험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 출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박수현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u>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 대파대, 가축입식비 등을 지원 중이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2025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품목은 총 76개이지만 전국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서 차이가 남.

예컨대 참두릅의 경우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처음

포함되었으나 정부가 생산량·농가수·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주산지 4곳(전북 순창, 전남 순천·광양, 경남 하동)을 우선 도입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2025년 3월말 저온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⁴⁸⁾

[농업재해보험 사업지역 현황]

구 분	사업지역
사과·배·단감·뽕은감	전국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마나리·쑥갓)	전국
시설작물(감자)	전북(김제, 부안)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전국
봄배추	강원(평창), 경북(영양), 전남(해남)
단호박	전국
밤·대추·호두·감귤·고추	전국
수박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전북(고창, 진안)
봄감자	경북, 충남
고구마·옥수수(사료용 포함)·벼(조사료용 포함)·대파	전국
벼(가루쌀)	전국
고랭지감자	강원, 경북
고랭지배추·고랭지무	전국
인삼	전국
참다래·콩	전국
팥	전국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가을·월동당근	전국
가을배추	충북(괴산), 전남(해남), 경북(영양)
메밀	전남, 제주
양배추	전국
가을무	강원(홍천), 경북(예천), 충남(당진), 충북(충주), 전남(영암, 무안, 나주), 전북(고창)
가을감자·브로콜리	전국

48) 농민신문, “보성 ‘참두릅’ 저온피해 속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못해 ‘속앓이,’” 2025. 4.12.

구 분	사업지역
월동무	제주
월동배추	전남(해남)
쪽파.실파(1형)	충남(아산), 전남(보성)
쪽파.실파(2형)	충남(아산)
시금치	전국
차	전국
마늘	전국
양파	전국
귀리	전남(강진, 해남)
밀.보리	전국
매실.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복분자.살구.오디	전국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블루베리	전북(순창), 전남(담양), 충북(영동), 경기(평택), 경북(상주, 의성)
두릅	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 순천)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자료: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은 보험대상 품목과 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농업환경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은 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지원항목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70	30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70	30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이상)	42	18	30	10
농림시설·설비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24.5	10.5	55	10
농기계	○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	24.5	10.5	55	10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	70	30		
축산시설·설비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초지 유실·매몰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70	30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35	15	30	20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35	15	30	2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공공시설	○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100	-		
	- 국가관리	50	50		
	- 지방관리	70	30		
간접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별도지원			
가뭄대책	○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50	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참고로 미국의 비보험작물보험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NAP)은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⁴⁹⁾의 긴급 재해지원을 위한 제도로, 예상 생산량의 50%를 농작물 평균 시장 가격의 55%로 제공하고 있음.⁵⁰⁾

49) 식용작물, 사료작물, 버섯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된 작물, 꿀이나 단풍나무 수액과 같은 특산품, 사탕수수 등과 같은 작물을 대상으로 함.

50)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 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 p. 20

한편, 송옥주의원안은 친환경농어업을 통한 생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되지 않고 재해대책 지원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어업을 예시로 드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다고 보임.

11. 심의위원회 구성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윤준병의원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의 “대표”에 한정하지 않고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윤준병의원안 제5조제4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3. ----- ----- ----- -----제5조제1항에----- ----- ----- ----- -----.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① 농어업재해대책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u><신 설></u>	1.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u><신 설></u>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u><신 설></u>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u><신 설></u>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u>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u><신 설></u>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신설>	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음영: 윤준병의원안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2.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음영: 윤준병의원안
<신설>	⑥ 제4항제1호·제5호 및 제5항제1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⑦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⑧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u><신설></u> <u>제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u> <u>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u>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u>1.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u> <u>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u> <u>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u> <u>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u> <u>5.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u> <u>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제5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u> <u>심의위원회의</u>----- ----- ----- -----.

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 의견

「정부조직법」 제4조⁵¹⁾에 따라 자문기관(자문위원회 등)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견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④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③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51)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그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관계부처 국장급,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추가하며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재해대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시행령의 심의위원회 규정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시행령	개정안
구성	20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농림축산업인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문대림·이원택의원안)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윤준병의원안)

구 분	시행령	개정안
심의 사항	-	■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	2년	2년
기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없음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자료 : 현행 시행령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기본계획 및 재해대책 등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상 효율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5조의2(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제1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및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송옥주의원안은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송옥주의원안
<신설>	제5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	제5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와 관련된 사항 등은 이미 현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기능이 중복됨.

(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제4조⁵²⁾에 따라 자문기관(자문위원회 등)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재해 피해를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임.

현재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6인으로 구성됨.

위원 구성에는 기상청의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포함되며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기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심의를 하고 있음.

52)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비 고
위 원 장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당연직
부 위 원 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
위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위 원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
위 원	국 방 부	군수관리관	"
위 원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위 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위 원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
위 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위 원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
위 원	산 림 청	산림재난통재관	"
위 원	기 상 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
위 원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	"
위 원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	"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직
위 원	한국농수산대학	교 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9.19.제출)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일부 기능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기후위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업재해대책 위원회의 구성]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3.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대책에 응하여 지원을 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7조(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 ----- <u>자</u>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다)에게-----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u>시·도지사</u> ----- ----- -----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u>자</u>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자</u>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u>자</u>를 포함한다)에게-----. ④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5조⁵³⁾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구

5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이 존재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발생 및 우려에 따라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러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응급대책에 종사하게 하여 응급조치 및 응급대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재해 이후 발생한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다 두텁게 보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상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범위에 응급조치·응급대책에 종사한 주민이 포함되므로 개정 실익이 다소 낮아 보임.

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9조의2(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⁵⁴⁾에 따라 재난에 관한 통계 등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 간 상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농작물 생산량 통계 등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⁵⁵⁾.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여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피해 농가·어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조·지원을 하려는 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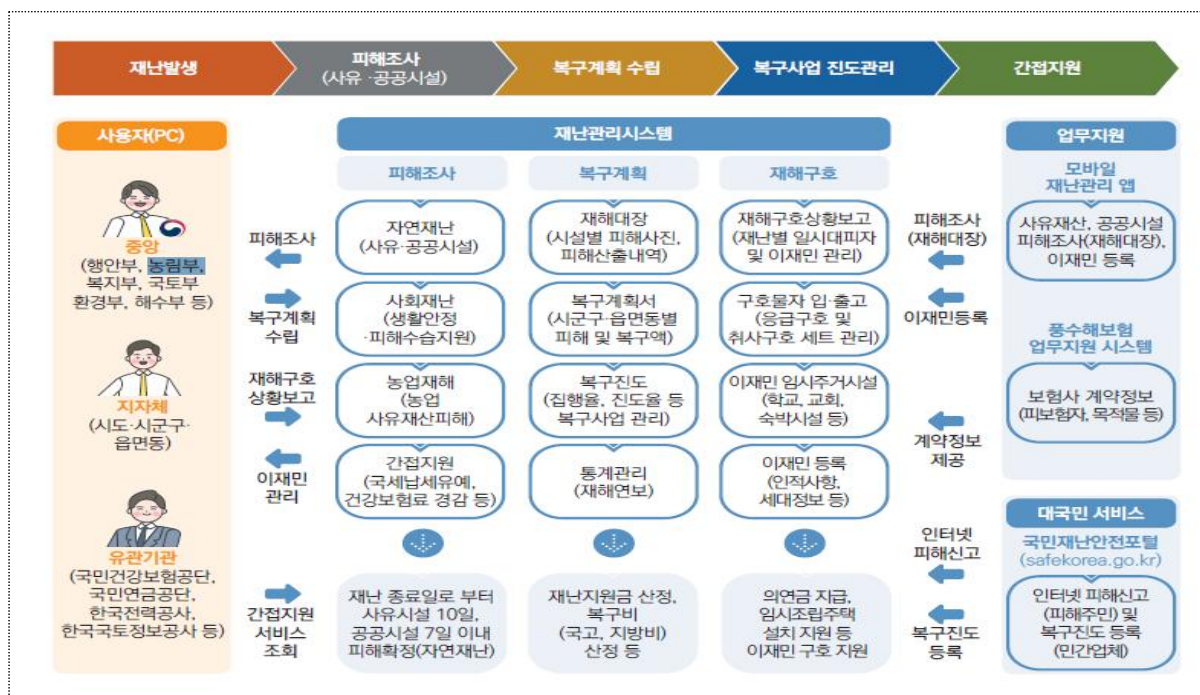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5) 편지은,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12.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복구분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2025.4.16.)

NDMS는 중앙·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황전파, 통합문자, 홍수·가뭄·지진·하천·기상정보, 통합 CCTV, 국가기반시설 현황,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등 분야별 재난·안전시스템 총 34종을 통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NDMS 체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사유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입력하여 복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5. 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9조의3(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행정절차법」 제40조⁵⁶⁾에 따르면,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56)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나. 검토의견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는 재해를 입어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인 신고사항, 신고 방법 및 신고기간 등은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조(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① 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 용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 발생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이러한 신고 의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문자, 마을방송, 대면 안내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와 같이 알릴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해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 “지역”의 농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고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6. 부칙

개정안들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문금주의원안의 경우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윤준병·문대림·송옥주·어기구·이원택·박수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정부의 연구용역 추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하위법령 마련 전 합리적 보조 및 지원 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
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농업재해 포함)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건보료,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등)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보증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송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참고 2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2024년)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대설·한파 (1.22.~24.)	제주지역 대설·한파로 월동채소 연 피해,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07호	- 농작물 732.9ha * 월동무 714.1, 브로콜리 3.8, 배추 2.7, 양배추 2.6 등 - 가축폐사 말 6마리, 꿀벌 5,158군 - 농업시설 0.03ha(축사)	3,246백만원 - 보조 2,390(국비 1,673) - 융자 521 - 자부담 335
호우 (2.18.~20.)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맥류, 채소류 침수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69호	- 농작물 2,147.3ha * 보리 1,170.6, 귀리 459.9, 밀 203.9, 양파 103.6 등	2,001백만원 - 보조 1,986(국비 1,390) - 융자 9 - 자부담 6
대설 (2.20.~22.)	강원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파손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0호	- 농업시설 9.6ha * 인삼시설 5.9, 비닐하우스 2.9, 과수시설 0.5 등	1,108백만원 - 보조 388(국비 272) - 융자 610 - 자부담 110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0
일조량 부족 (‘23.12월~ ‘24.2월)	겨울철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12개 시·도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전북, 제 주, 광주, 충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에서 농작물 생육불량 등 피 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022호	- 농작물 9,606.2ha * 딸기 2,521.3, 참외 1,990.8, 수박 852.8, 방울토마토 549.7, 토마토 530.7, 고추 438.3, 애호박 352.3 등	30,182백만원 - 보조 29,080(국비 20,356) - 융자 661 - 자부담 44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47,398
매실 냉해 (2~3월)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매실 꽃 개 화기(2~3월) 이상저온으로 매실 꽃 기관 형성 불량 및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420호	- 농작물 1,498.1ha * 매실 1,498.1	4,579백만원 - 보조 4,579(국비 3,20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11
마늘 이차생장 및 양파 생육불량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지역 겨울철 고온, 잦은 강우, 일조 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마늘 인편 분화, 양파 추대·분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5,714호	- 농작물 8,165.4ha * 마늘 3,035.9, 양파 5,129.5	22,679백만원 - 보조 22,679(국비 15,875) * 정책자금 상환연기: 3,636
호우·강풍 (5.4.~6.)	전남, 제주지역 집중호우와 강풍으 로 맥류 등 농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512호	- 농작물 4,241.8ha * 보리 1,664.9, 귀리 925.3, 밀 630.0, 단호박 81.8, 양파 31.0, 감자 13.0 등 - 농경지 0.11ha - 농업시설 0.02ha(축사)	4,571백만원 - 보조 4,158(국비 2,911) - 융자 250 - 자부담 163 * 정책자금 상환연기: 1,563
우박·강풍 (5.15.~16.)	전북, 전남지역 우박과 강풍으로 과수 열매 타박, 가지 꺾임, 채소류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457호	- 농작물 310.0ha * 사과 110.6, 참다래 79.9, 고추 46.0, 배 18.6, 복숭아 13.0, 단호박 10.3, 단감 4.8 등	853백만원 - 보조 846(국비 592) - 융자 6 - 자부담 1 * 정책자금 상환연기: 682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 (7.8.~19.)	13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리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6,384호	- 농작물 9,449.6ha * 콩 2,051.5, 벼 808.5, 상추 623.1, 복숭아 581.4, 인삼 566.5, 수박 550.3, 고추 488.7, 참외 458.0, 포도 318.0, 들깨 294.1, 방울토마토 212.1, 참깨 192.8, 옥수수 167.3, 멜론 163.5 등 - 농업시설 63.2ha * 비닐하우스 26.5, 양액시설 24.9, 과수시설 4.2, 인삼시설 5.9 축산시설 0.9 등 - 가축폐사 1,022천마리*, 꿀벌 11천군, * 닭 992.5천마리, 소 126마리, 돼지 587마리 등 - 농경지 890.6ha - 공공시설 97개소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137,835백만원 - 보조 92,946(국비 55,706) ·보조(사유) 58,561(국비 39,169) ·보조(공공) 34,385(국비 16,537) - 융자 33,249 - 자부담 11,640 * 정책자금 상환연기: 91,668
호우 (6.19.~30.)	제주지역에 6월 지속된 호우로 메밀의 수발아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6호	- 농작물: 195.5ha * 메밀 수발아 피해(대파대 지원)	756백만원 - 보조 378(국비 265) - 융자 227 - 자부담 151
호우 (7.21)	전남 영암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무화과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33호	- 농작물: 60.1ha * 무화과 58.8, 포도 0.6, 방울토마토 0.7	200백만원 - 보조 198(국비 139) - 융자 1 - 자부담 1
폭염 인삼피해 (7~8월)	8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에 폭염으로 인한 인삼 잎마름 및 고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891호	- 농작물: 2,955ha * 인삼 잎마름, 고사	11,684백만원 - 보조 11,643(국비 8,150) - 융자 25 - 자부담 16 * 정책자금 상환연기: 59,022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7~9월)	11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울산, 대전)에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7,632호	- 농작물: 17,732ha * 벼멸구 병충해 피해	18,603백만원 - 보조 18,256(국비 12,779) - 융자 208 - 자부담 139 * 정책자금 상환연기: 39,229
호우 (9.19.~21.)	11개 시도(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호우로 인한 농작물, 가축 폐사, 공공시설 피해발생 * 피해 농가수: 26,836호	- 농작물 27,900ha * 벼 24,472.1, 배추 563, 배 435.1, 콩 278, 무 250.7, 상추 226.6, 딸기 198.3, 방울토마토 99.9, 기타 1,376.8 - 농업시설 11.9ha * 과수시설 8.1, 양액시설 2.8, 비닐하우스 0.8, 인삼시설 0.1, 축사 0.1 - 가축폐사 419천마리*, 꿀벌 2천군 * 육계 296.4천마리, 소 7, 산란계 52.5, 오리 69.6 등 - 농경지 62ha - 공공시설 13개소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41,958백만원 - 보조 35,985(국비 19,943) ·보조(사유) 32,140(국비 17,966) ·보조(공공) 3,845(국비 1,976) - 융자 4,055 - 자부담 1,918 * 정책자금 상환연기 91,668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폭염 (8~9월)	전북 고창, 제주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및 레드향 열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922호	▪ 농작물: 522.1ha * 레드향 444.0, 단호박 78.1	▪ 2,329백만원 - 보조 2,329(국비 1,630) * 정책자금 상환연기: 728
대설·강풍 (11.26~28)	8개 시도(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인천, 경남, 서울)에서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5,218호	▪ 농작물 475.8ha * 화훼 67.8, 포도 55.8, 블루베리 53.2, 인삼 45.1, 사과 36.2, 콩 29.0, 오이 19.8, 배 18.8, 토마토 16.6, 복숭아 11.8, 배추 10.2 등 ▪ 농업시설 2,525.3ha * 인삼시설 1,129.9, 비닐하우스 773.0, 과수시설 481.7, 축사 113.2 등 ▪ 가축폐사 1,010천마리*, 꿀벌 5천군 * 육계 613천, 산란계 137천, 종계 49천, 돼지 1,906, 소 382, 오리 200, 염소 77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329,068백만원 - 보조 103,338(국비 70,285) - 융자 189,957 - 자부담 35,773 * 정책자금 상환연기: 246,879
합 계		▪ 농작물 85,991.8ha ▪ 농업시설 2,610.1ha ▪ 가축폐사 2,451천마리, 꿀벌 23천군 ▪ 농경지 952.7ha ▪ 공공시설 110개소 * 피해 농가수: 146,233호	<합계:611,652백만원> - 보조(사유):292,949(국비 196,657) - 보조(공공):38,230(국비 18,513) - 융자:229,779 / 자부담 : 50,694 * 정책자금 상환연기: 683,804

□ 해양수산부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고수온 7~9월	전남,경남, 충남,경북, 제주	· 2,275어가, 143,020백만원 · 어류(조피볼락, 말귀치, 송어 등) 등 67,585천마리 · 멍게, 굴 등 23천줄	· 계: 95,008백만원 - 보조 42,006(국비 29,379) - 융자 31,400 - 자부담 21,602
빈산소 수괴 7~10월	경남	· 294어가, 7,366백만원 · 굴·홍합 등 8천줄	· 계: 6,675백만원 - 보조 3,464(국비 2,411) - 융자 1,926 - 자부담 1,284
합 계		▪ 총 2,569 어가 ▪ 어류 등 67,585천마리 ▪ 굴·홍합·멍게 등 31천줄	< 합계: 101,683백만원 > - 보조: 45,470(국비 31,790) - 융자: 33,326 - 자부담: 22,886

참고 3 해외 농업 재해대책 비교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미국/대재해 작물보험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CAT)	심각한 재해 발생시 농업 경영 회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해보장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과 가축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농가 -실제 생산량(Actual Production History)과 최소 4년 동안의 평균 농가별 수확량을 기반으로 판단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전액 연방정부에서 지원, 농가는 관리수수료만 부담 (작물당 655달러)	-1994년 제정된 작물보험개혁법 (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에 의해 도입 -신규농, 영세농 관리수수료 면제 -보장 범위는 낮지만 보험료 전액 보조 -관리주체: 위험관리청(RMA)
미국/비보험 작물보험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NAP)	농업 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재해 지원 제도	-식용으로 재배되는 농작물 -토종사료 포함, 가축소비를 위해 식재되는 곡물 및 사료작물 -면화 및 아마등 섬유용 작물 -버섯, 화훼 등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꿀, 단풍수액 등 특산품 -바다귀리, 해초 -사탕수수, 바이오매스수수 -재생전기, 재생바이오 연료 등 공업원료로 재배되는 작물 -수경재배, 인삼, 잔디 -종자용 작물	-생산위험을 겪게 농산물을 재배한 토지소유자, 임차인, 소작인 -평균 조정 총소득이 연간 90만 달러 미만 -농가는 비보험작물보험(NAP)과 전농장 수익 보호 프로그램(WFRP) 모두 참여가능 (중복지원불가)	-2014년 농업법 개정 이후 평균 시장가격의 55%에서 100%로 지불율을 상향조정, 보장수준은 생산량의 50~65% 범위에서 증가하는 적용 범위를 승인 -2018년 이후 곡물당 서비스수수료 작물당 325달러, 생산자당 한도는 최대 825달러로 인상	-축산농가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료 구입비용 지원 -신규농, 영세농, 자격취득중인 농민, 목장주 등에게 관리수수료 면제 및 할증료 50% 혜택 -관리주체: 농무부의 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미 국 / 전 (全) 농 장 수익보험 (Whole F a r m Revenue Protection , WFRP)	직거래 시 장, 로컬시 장, 특산물 판매 등에 참여 하는 로컬푸드 생산자를 위해 특별 히 개발	농장에서 재배 한 모든 작물과 가축	보험기간 중 판매 하는 상품 또는 재 판매를 위해 구입 하는 상품으로부 터 얻을 것으로 예 상하거나, 얻게 될 수익의 손실을 보호	-기본보장 옵션 은 CAT 수준과 동등 -예상 생산량의 50%를 농작물 평균 시장가격의 55% 제공 -농장 생산물의 가짓수에 따라 보충수준 차이 발생(3종류 이상 재배할 때 80~85% 보장범 위에서 보험료 최대 할인 받음)	-국가의 모든 카운 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 보험 옵션- 신규농 은 보험료 할인 (10%) 기간을 5 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관리주체: 위험 관리청(RMA)
캐나다/농 업투자 계정 (AgriInv est)프로 그램	자연재해 나 시장위 험 등 포괄 적인 위험 상황에 대 응	농장에서 재배 한 모든 작물과 가축	농가소득이 15% 미만 감소했을 때 지급	농민은 매년 허용 가능한 순 매출 (Allowable Net Sales, ANS)의 최대 100%를 AgriInvest 계정 에 입금-허용 가 능한 순 매출 (ANS)의 1%에 대한 정부 기부금 을 받을 수 있으 며 언제든지 AgriInvest 계정 에서 자금 인출 가능	1단계 위험 상황 에서 지급하는 비 과세 저축계좌
캐나다/농 업안정 (A g r i Stability) 프로그램	생산 손실, 비용 증가 및 시장 상 황 등으로 인한 농업 이익률 보 호	농장에서 재배 한 모든 작물과 가축	해당 연도의 이익 률(margin)이 역 사적 기준 이익률 보다 15%~30% 미만일 때(2단 계), 30%~100%(3단 계)일 때, 네거티브 마진(4단계) 등에서 지급됨	지난 5년간 이익 률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뺀 나 머지 3년의 평균 값에서 기준 이하 로 순이익이 감소 했을 때 지급	2~4단계 위험 상 황에서 지급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캐나다/농업 보험 (Agri Insurance) 프로그램	자연 재해로 인한 농민의 소득 안정	대부분의 작물	생산량 감소 10~50%일 때 지급	보험료는 농민이 40%, 주정부 36%, 지방정부 24% 분담, 행정비용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60대 40으로 부담	각 지방의 공기업 또는 지방 농업부의 지사가 담당
캐나다/농업 구호 (Agri Recovery)	경기 변동에 대비한 농가소득 지원뿐 아니라 이례적인 재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지원	모든 작물과 가축	특별 재해로 정의될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지원과의 잔여 격차, 부족분 지급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해피해 보상비율은 60대 40이며 농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음	보장범위와 위기대응 측면에서 AgriStability와 중복
일본/농업 경영 수입 보험 프로그램 Revenue Insurance program	자연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 판매가격 감소, 시장 변동으로 인한 수익 손실 보상	평균 5년 수입 기반 90% 미만 하락	복식부기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생산자는 수입보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기준수입과 해당 연도 수입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농업재해보상법을 2017년 ‘농업보험법’으로 개정한 이후, 2019년 1월 수입보험제도 실시 -수입보험제도 실시 이전 농업소득 보장 정책 도입을 위한 5년 간 농가 소득 자료에 대한 축적 등의 준비기간을 거침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일본/농업 공제제도 Agricultural Mutual R e l i e f Insurance System	작물 별로 자연재해, 해충·질병 발생, 화재 등 기타 사 건 발생으 로 인한 손 실에 대한 보상	1) 쌀, 밀, 보리 (의무) 2) 밭작물(감 자, 콩, 사탕수 수, 녹차, 옥수 수, 양파, 호 박, 흙, 양조) 3) 축산(의무) 4) 과일, 과일 나무 5) 원예 시설	-보상비율은 생 산량 손실, 피해 규모, 지역평균 등에 따라 50% ~90% -농업인이 부담 하는 실질 보험 료율은 평균 2.2% 정도 -2017년에 기존 의 농업재해보상 법을 농업보험법 으로 전면 개정	-AMR 협회와 지 방 정부가 각각 보험 프로그램 운영 -AMR 협회와 지 방 정부의 부채 는 현 AMR 연맹 에 의해 재보험 되며, 중앙 정부 의 부채는 국가 정부에 의해 재 보험 됨 -중앙 정부는 AMR 협회나 시 정부 보험 프로 그램에 가입하는 생산자들을 위해 생산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1947년 “농업재해 보상법(農業災害 補償法)”을 제정하 고 농업공제제도 도입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2.